#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96

발의연월일: 2020. 8. 26.

발 의 자: 김윤덕·박상혁·강훈식

진성준 · 김수흥 · 민병덕

이용호 · 이원택 · 이상직

강준현 • 윤준병 의원

(11인)

##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 00 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임.

한편, 새만금 사업지역은 3GW급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난 '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및 스마 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새만금청장의 요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를 국토교 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 2조의3 신설).
- 나. 새만금사업지역 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관련된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52조의4 신설).
- 다.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 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52조의5 신설).
- 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안 제69조 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5까지 및 제6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3(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요청 등) ① 새만금청 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부터 제44조의2까지를 준 용한다.
- 제52조의4(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5(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 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 1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 시건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스마트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2조의3(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 등) ①
		<u>새만금청장은</u> 새만금사업지역
		의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
		조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
		산업단지")로 지정을 요청할 수
		<u>있다.</u>
		②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u>률」 제43조부터 제44조의2까</u>
		지를 준용한다.
<u>&lt;신 설&gt;</u>		제52조의4(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특례) 새만금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u> </u>
		린 산업단지에 대해 필요한 지
		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신 설>

<신 설>

할 수 있다.

제52조의5(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 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 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 대 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새 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수립한스마트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

# <u>인한다.</u>